

미술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

The resale right after the death of the author of a work of art

김 영 립*
Kim, Young-lim

목 차

- I. 서론
- II. 추급권의 인정취지
- III. 각국의 입법례를 통한 추급권의 내용과 특수성 검토
- IV. 미술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
- V. 결론

국문초록

추급권이란, 미술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비율 분배받을 권리인데, 한-EU FTA 발효 후 추급권의 국내 도입에 관하여 2년 내에 재협약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급권에 관한 구체적 도입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추급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율해야 할 미술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에 관해서도 논의가 없다.

아래에서는 미술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EU지침에 관한 판결 및 프랑스의 입법태도를 살펴본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르면, EU지침 제6조 제1항은 저작자 사후 추급권료 귀속의 인

논문접수일 : 2014.09.25

심사완료일 : 2014.10.22

게재확정일 : 2014.10.28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적범위에 관하여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승계인(those entitled under author of the work)'이라고만 규정하였는데, 이때의 '저작자의 권리승계인' 범위는 EU 지침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U지침의 추급권 입법목적을 보면 저작자 사후 추급권의 귀속 문제는 EU지침이 추급권을 회원국 간에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목적 밖에 있다. 그러므로 결국 EU지침은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의 구체적 범위를 각국이 스스로 규율하도록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추급권을 최초로 규정한 프랑스의 경우, 추급권은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자의 유언의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자의 법정상속인에게만 귀속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태도가 비록 프랑스에서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국내에 도입될 경우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우리가 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를 규율할 때에는 추급권의 보장적 목적 외에도 저작자의 유언의 자유나 저작권 승계인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추급권, 재판매권, 저작자 사후 추급권, 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

I. 서론

추급권(Resale right, 재판매권)이란, 미술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비율 분배받을 권리¹⁾이다. 미술저작자에게도 저작물이 재판매되는 과정에서 상승되는 가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추급권이 현재까지 우리 저작권법에는 도입된 바 없으나,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EU FTA 협상과정 중 국내 추급권 도입이 문제되었는데, 우리는

1) 추급권(Droit de suite)의 원어를 직역하면 '연속, 후속의 권리'이다(이동기·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85호(2009.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48면).

추급권이 국내적으로 매우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의 의견수렴과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EU 대표부에게 강조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추급권 도입이 의무사항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발효²⁾ 후 2년 내에 도입여부를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³⁾ 그러나 한-EU FTA 발효 후에도 추급권에 관한 구체적 도입 방향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추급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미술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에 관해서는 논의가 전무하다. 둘째,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미술품이 감상을 넘어 투자의 대상으로도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투자와 전매가 행해짐에 따라 미술품의 최초 판매 이후에도 미술저작자들에게 계속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에 대한 미술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는 추급권의 최초 도입취지나, 그 내용 및 특수성을 살펴본 후에 비로소 연구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추급권 인정취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추급권을 이미 도입한 각국의 입법배경과 입법태도를 통해 추급권의 내용과 특수성을 검토한다. EU 회원국들에 대해 추급권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정한 EU지침 2001/84/EC(the Resale Directive, 이하 'EU지침')⁴⁾의 태도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사건"⁵⁾의 예심절차(preliminary ruling)로서 진행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Case C-518/08 판결을 보기로 한다.

2)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었다.

3) 남영숙, "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제82호(2008.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14면.

4)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OJ 2001 L 272, p. 32), 이하 EU지침의 번역 참조: 채명기, "미술 원작품의 저작자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2001/84 지침", 「계간저작권」 제56호(2001. 겨울호), 한국저작권위원회, 71~78면.

5)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3ème chambre, 3ème section, jugement du 29/10/2008 (06/00303).

대상판결은 EU지침에 정한 저작자 사후의 추급권 귀속 조항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가 '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구체적인 인적범위'는 EU지침으로써 통일적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국내법이 임의로 정하도록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

“살바도르 달리 사건”의 관할지 법이며 최초로 추급권을 입법화한 프랑스 저작권법⁶⁾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유언에 의한 수증자(legatees)등 저작권을 승계 받는 다른 권리자(successors)가 있더라도 추급권의 이익만은 법정상속인(heirs)이 누린다고 규정한다. 저작자 사후에 오로지 법정상속인에게만 추급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태도는 추급권의 특수성 중 특히 양도불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II. 추급권의 인정 취지

1. 미술저작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먼저 추급권은 미술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미술저작자를 지원하여 화랑이나 경매회사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회복하는데 그 인정취지가 있다. 이를 추급권의 사회보장적 기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⁷⁾ 작품의 판매 수익이 생계 수단이지만 최초 판매 당시에 명성이 없는 미술저작자는 작품을 화랑 등에 매우 저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추후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미술저작자의 미술품 가치가 증대될 수 있지만, 그 가치 증가액은 바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 재판매에 참여한 화랑이나 개인수집가의 몫이 되고 이 경우 미술저작자들은 수익 분배에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어 불합리하다. 추급권은 이러한 수익 귀속의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미술품의 유통과정에

6) Law No 2006-961 of 1 August 2006 on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JORF, 3 August 2006, p. 11529) Article L. 122-8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Code ('the IPC').

7) 이동기·김솔하(주1), 48면.

서 발생하는 가치상승과 이윤에 대해 미술저작자가 참여하고 이를 추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⁸⁾

또한, 음악이나 어문, 영상 등 다른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을 회복하자는 이유도 있다. 프랑스는 1791년과 1793년에 복제권과 실연권을 특별한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술품의 특성상 미술저작자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다른 저작자들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게 보호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⁹⁾ 즉, 복제권이나 실연권에 따른 판매액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저작자와 달리 미술저작자는 한번 작품을 매매하면 더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저작자를 경제적 곤궁으로부터 해방시켜 창작에만 열중하도록 하며 그러한 결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¹¹⁾ 추급권료는 화가 스스로가 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얻은 명성에 힘입어 작품가격이 상승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므로, 추급권은 저작자에게 창작의욕 내지 명성획득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 것이고,¹²⁾ 그러한 인센티브는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8) Katreina Eden, "Fin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should be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18 N.Y. Int'l L. Rev.* 121, 2005, p.124.

9) Michael B. Reddy,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fine artists should have the right to a resale royalty", *Laya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Journal*, 1995, p.513.

10) Eliza Hall, "The French exception: Why the resale royalty works in France and why it matters to the U.S" *I J. Int'l Media&Ent. L.* 321, 2007, p.324.

1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업 미술가 전체의 96%가 창작 수입만으로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작가 본인의 부업(29%)이나 배우자 소득(53%)이 가정생활의 주 소득원이었다. 연간 작품판매에 의한 소득은 500만원 이하가 70%, 1000만원 이하가 18%나 되어 대다수의 작가가 작품 판매에 의한 소득의 열악함이 확인되었다(미술신문 제337호, 2004. 9. 15면). 미술작품의 재생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다른 작품을 창조하고 판매하는 길이 유일하며, 미술작품들은 공정이용(fair use)의 근거를 들어 저작권료를 미술저작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근거로 추급권 필요성을 강조한 견해(Akiko Ogawa, "The conditions need to be consider for implementing the resale royalty right",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8, p369~373)도 있다.

12) 소병희, "미술품 재판매 저작권료 부과에 대한 소고", 「문화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04. 12. 8면.

2. 파생적 이익 확보

(1) 위작의 근절

미술품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 작품의 위조도 기승을 부리는데, 미술품을 위조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³⁾ 그런데 추급권을 보장한다면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 유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미술품에 대한 자신의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기도 용이해진다.¹⁴⁾ 저작자는 추급권에 따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저작물의 동일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⁵⁾

미술저작물이 재판매되는 경우 미술가는 예술적 보증(저작자의 진품 보증)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¹⁶⁾도 있는바, 이와 같은 보증대가로서의 성격도 추급권의 한 면모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추급권 제도의

13) 전문 감정이나 재판을 통한 위작 판별이 매우 어렵거나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을 시사한 국내의 문헌 소개를 통해, 추급권 제도와 같은 자율적·사전적인 위조방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시비에 관하여 재판부는 “안목 감정의 경우 주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학 감정조차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로 조정을 권고했다(김미영 기자, ‘빨래터 위작 논란’ 법정 공방도 평행선, 뉴시스 2009. 6. 17 기사). Greenberg Gallery 사건(Greenberg gallery, Inc.v. Bauman 817 F. Supp. 167(D.D.C 1993))에서는 Alexander Calder의 《Rio Nero》 위작시비에 대해 Calder 작품 판정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인 감정사가 위작이라 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원고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진품이라 결정한 바, 이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석이 있다. “위작이라 주장했던 원고들은 소송에서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작이라 판정한 감정인의 명성 때문에 위작으로 의심되는 작품을 팔지도 못하게 되어 이중패배의 결과가 되었다.”(Ralph E. Lerner, Judith Bresler, *Art Law(3rd edition)*, Practising Law Institute, 2005, p.1331).

14) Michael B. Reddy(주9), p516.

15) 소병희(주12), 14면.

16) Matina Supper, “An analysis of droit de suite from a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2000, p.9.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현재 추급권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집중관리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중앙집중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관리단체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뿐이다.¹⁷⁾ 추급권 도입을 계기로 집중관리제도 운영이 법적으로 정비될 경우, 지속적으로 저작물의 사용을 감시하고 등록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¹⁸⁾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비공개 거래가 성행하고, 계약서 없이 거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작품의 구매자, 가격, 체계적인 유통기록 등의 정보가 표출되지 않는다. 과대평가된 작품가격의 하락을 우려한 일부 작가나 화랑, 그리고 신분노출을 꺼리는 구매자들의 영향력 때문이다.¹⁹⁾ 거래의 음성화나 시장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미술시장의 폐쇄성은 비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조장하고, 이러한 결과로 미술품의 가치평가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게 되며,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²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중관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이래로 저작권법 제7장에 저작권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단계에 있지 않다. 추급권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집중관리제도의 체계화에도 적극적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각국의 입법례를 통한 추급권의 내용과 특수성 검토

1. 각 입법례의 배경

추급권은 전통적으로 예술창작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프랑스에서 탄생(1920

17) WIPO, "Wipo national seminar on Copyright, related rights and collective management", WIPO, 2005, p7~8.

18) 오승중, 『저작권법』, 2007, 927~931면.

19) 최병식, 『미술시장 트렌드와 투자』, 동문신, 2008, 122면.

20) 남궁술·박광동, "유럽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대응", 한국법제연구원, 2008, 19면.

년 5월 20일 법)²¹⁾ 하였는데, 당시 입법에는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술가들의 미망인을 돕고자하는 목적도 작용하였다.²²⁾ 프랑스의 법리에 따라 도입된 이후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가입국을 중심으로 점차 유럽의 주요국이 추급권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베른협약²³⁾은 1886년 처음 체결되었으나, 추급권은 갈등 끝에 1948년에서야 채택되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같이 대륙법적 관점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영국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체계 국가들은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전통 때문에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한 추급권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²⁴⁾

한편 베른협약 제14조의 2에 의하면 협약국이 추급권을 국내법상 도입할지 여부는 각국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²⁵⁾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로 인해 단일시장을 표방하는 EU가 미술분야에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세계 2위 규모의 미술시장을 둔 영국은 추급권을 2005년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점차 EU 내 미술거래의 조건과 환경 차이가 존재하게 되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현상”²⁶⁾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퍼졌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급권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생겼다.

결국 미술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추급권에 대하여 유럽의회 및 유럽이 사회의 2001/84/EC지침이 2001년 9월 27일 브뤼셀에서 채택되었다. 본 지침의 목적은 작품의 지속적 재판매에 관한 이익에 있어 원저작권자의 법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유럽회원국간에 현존하는 규정의 불일치를 조화시키기

21) Francois Duret-Robert, *Droit du marché de l'art*, Dalloz, 2004, p.232(이동기·김솔하(주1), 49면에서 재인용).

22)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계간저작권」 제79호(2007 가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13면.

23) 우리나라는 1996년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추급권을 정한 제14조 3항은 유보하였다.

24) Victoria Till, “Defeated or Deferred? Why a resale royalty was reject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007, vol. 13, no. 3, p.288.

25) 베른협약 제14조의3 제1항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 국내법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 미술저작물 및 작사자와 작곡가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에 그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

26) Francois Duret-Robert(주21), p.232.

위한 것이다.²⁷⁾ 베른협약 때와 달리 추급권 도입이 회원국에 강제되었으므로, 기존의 추급권 시행국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각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추급권의 신설 도입국은 2006년 1월 1일까지 입법화하는 과정을 겪었다.²⁸⁾

EU지침은 추급권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영의 세부에 관하여는 유럽 미술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분하여 전자만을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국내법에서 임의로 정할 사항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EU 내 각국 입법 내용의 공통부분은 EU지침 내용으로써 살피고, 주요 각국의 특이점은 나라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화가 로버트 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²⁹⁾가 추급권 추진운동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1976년 California Resale Royalty Act가 통과³⁰⁾되어 미국에서 유일하게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국가와 다른 특색이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의 추급권을 별도로 소개한다.

2. EU지침 2001/84/EC의 주요내용

(1) 추급권의 성격: 양도 · 포기불가능성

EU지침 제1조 제1항은 “회원국들은 저작자가 미술 원작품을 최초로 이전한 후 그의 이익을 위하여 원작품의 재판매로부터 얻은 판매가에 기초하여 추급권료를 수령할 권리를 사전포기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하여야 한다.”

27) 석종욱, “독일 제5차 개정 ‘저작권법’상의 추급권과 유럽공동체 지침 2001/84”, 『최신 외국 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소, 2007, 21면.

28) 이동기·김솔하(주1), 49면.

29) Rauschenberg는 자신의 그림 《Thaw》가 팔린지 10년 후, 약 100배 가량 작품가격이 상승한 것을 경험한 후 추급권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추급권 추진운동을 일으켰다. 당시 하원의원인 Alan Sietoty는 이 소청을 듣고 캘리포니아 주법에 추급권을 도입하는 안을 제출하였다(Ralph E. Lerner·Judith Bresler(주13), p.1331).

30) Ralph E. Lerner, Judith Bresler(주13) p.1331. 미국은 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하나, 미국연방대법원은 1909년의 미국 저작권법이 주의 추급권 관련조항을 명백히 금지하지 아니하며, 추급권이 미국 저작권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부수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연방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고, 계약법의 원리나 적법절차 조항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621 F.2d 972 (9th Cir. 1980)).

라고 규정한다. 즉 권리의 사전포기 및 양도불가능성을 규정하여 약자의 지위에서 거래하는 작가가 작품을 판매할 때 추급권을 포기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추급권의 입법 연혁을 볼 때 미술가의 생존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포기와 양도불가능성은 추급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는 작품의 재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급권료에 대한 권리행사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추급권을 포기하진 못하더라도 작품의 재판매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채권은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권리 상태에 착안하여 추급권을 기대권의 일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³¹⁾

(2) 추급권의 적용대상인 미술작품의 범주

전문 제21조는 추급권이 인정되는 미술작품의 범주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고, 전문 제2조는 재판매의 대상이 '물리적 형태의 작품'이라 규정한다. 또한 전문 제19조는 추급권이 음악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픽과 조형 미술작품에만 한정되고 건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은 추급권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추급권이란 다른 분야 저작물과 달리 지속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미술저작물의 특성 때문에 도입된 권리가기 때문이다. 한편 비디오 아트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등이라는 비판이 있다.³²⁾

(3) 정보요청권

전문 제30조에 의하면, 추급권 제도의 회원국들에 의한 운용이 실질적 수단에 의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거래 감시를 위한 적절한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추급권료를 지급할 의무자로부터 필요한 정보

31) 김원오(주22), 21면.

32) Jörg Wünschel, "Article 95 EC revisited: is the artist's resale right directive a community act beyond EC competence", *Oxford Journal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Vol. 4, Nr. 2, 2009, p.5.

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추급권의 집중관리를 규정하는 회원국들은 또한 그 집중관리를 책임지는 단체에 단독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4) 재판매 요건

제2조는 재판매의 대상인 '미술원작품'을 그림, 콜라쥬, 페인팅, 소묘, 판화, 인쇄,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³³⁾, 유리공예품 및 사진과 같은 그래픽 또는 조형 미술작품이라 열거하고, 미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작품이거나 혹은 원작품으로 간주되는 사본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모든 재판매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양도행위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영리미술관과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의 재양도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초 작품 이전이 원작자로부터의 매입이 아닌 증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속의 판매 행위까지 재판매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나 상속 이후 상속인이 하는 최초판매는 재판매 범위에서 제외된다.³⁴⁾

또한 미술작품을 저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화랑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침 제2조에 의해 회원국들은 작품의 취득 후 3년 내에 이루어지는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추급권의 적용을 면제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예외는 재판매가가 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재판매행위에만 한정시킴으로써 미술인들의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한다.

(5) 지급의무자

제1조 제4항에서는 지불자는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라고 정한다. 추급권료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판매자가 그

33) 염색 실로 그림을 짜넣은 직물 작품을 의미한다.

34) Thomas Dreier et al.,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p.412~413.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³⁵⁾ 그러나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회원국은 이러한 원칙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6) 수령권자

제6조를 보면, 수령권자는 저작물의 저작자이고, 저작자 사후에는 제8조 제2항³⁶⁾을 조건으로 그의 승계인(those entitled under author of the work)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제7조를 보면, 사용료의 수령권을 갖는 자가 제3국 국민인 경우, 회원국들은 제3국 국민인 저작자 및 저작자 사후의 권리승계인에 대해 이 지침과 해당회원국들의 법률에 따라 추급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른다.

(7) 집중관리제도

회원국은 추급권료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강제적 혹은 임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한편, 회원국은 추급권의 행사, 특히 추급권의 관리수단에 대하여 규율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징수기관(collecting society)에 의한 관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회원국은 징수기관이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여타의 회원국의 국적을 보유

35) Thomas Dreier et al(주34), p.415.

36) 제8조 <추급권의 보호기간> 제1항: 추급권의 보호기간은 93/98/EEC 지침 제1조에서 정한 보호기간과 동일하다.

제2항: 제13조의 효력발생일에 추급권을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은 제1항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까지는 미술인의 사망 후에 그의 권리승계인(those entitled under the artist)의 이익을 위하여 추급권을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3항: 제2항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미술인의 사망 후 그의 권리승계인(those entitled under the artist)을 위하여 추급권을 적용하도록 요구받기 전에 자국의 경제운동자들이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추급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회원국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종료하기 최소 12월 전에 자체 판단을 내리는 위원회에 통지하여 위원회가 그러한 정보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적절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1월 내에 위원회에 통지하고, 자체의 결정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통지 및 정당성 입증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은 유럽공동체의 관보에 공표하고, 또한 유럽 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한 저작자에 대하여 부과할 금액이 징수되고 분배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³⁷⁾

(8) 보호기간

추급권은 저작권의 불가분적 일부이므로 다른 지분적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³⁸⁾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추급권의 보호기간은 93/98/EEC지침 제1조³⁹⁾에서 규정한 보호기간과 동일하다. 그러나 제2항은 효력발생일⁴⁰⁾을 기준으로 추급권 미적용 회원국들(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이 2010년 1월 1일까지는 미술인 사후 추급권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EU지침이 제정된 후 추급권을 새로 도입하는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이 2년을 추가로 더 유예한 상태이다.

3. EU 주요회원국의 입법상 특이점

(1) 프랑스

i) 프랑스는 1920년에 추급권을 최초로 입법화한 이래로 추급권의 양도불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은 가능하되, 유증에 의한 수증자나 기타 권리승계인을 배제하고 저작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만 상속을 인정한다

37) 김원오(주22), 25면.

38) 저작권이 공중의 영역에 들어가는 시점은 저작자의 권리와 문화예술의 사회적 이익이 조화되는 선에서 정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여러 이익의 형량 결과, 권리존속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입법화된 것이지만, 추급권의 이익은 저작물의 공중에의 이용이라는 이익과 형량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급권 보호기간을 다른 저작재산권과 동일하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다.

39)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 조화에 관한 EC지침 제1조 <저작자의 권리보호기간> 제1항: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짜와는 무관하게 베른협약 제2조상의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의 사망후 70년간 존속한다(이하 제2항~제6항은 생략).

40) EU지침 제13조<효력발생>: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 관보에 공표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는 점이 특이하다(제122조의8 제2항). ii) 또한 프랑스는 추급권 적용 요건으로서 최소재판매가액을 750유로로 하고(제122조의 4), iii) 미술품 등록을 요구하며, 이러한 등록에 의한 정보는 등록된 이후의 매매 기타 재양도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시장의 투명성 평가에 큰 역할을 하였다.⁴¹⁾ iv) 프랑스법은 저작자가 직접 추급권료를 징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시스템을 취하는데(제122조의 8 제4항), 현재는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피카소 재단이나 마티스 재단을 제외하고는 ADAGP(Société des auteur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매회사는 공매의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ADAGP에 통보하여야 하며, ADAGP가 추급권을 행사하면 ADAGP에 추급권료를 지급한다.⁴²⁾

(2) 독일

1962년 추급권을 도입한 독일은 i) 추급권 적용 요건으로서 최소재판매가액을 400유로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ii) 계속되는 양도로부터 발생한 추급권에 따른 청구권의 최대액은 12,500유로이다. iii) 추급권은 양도될 수 없고, 지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iv) 저작자는 미술상이나 경매인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의 저작물 양도에 관한 정보요구권을 가지며, v) 추급권 실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미술상이나 경매인에 대해 양도인의 성명 및 주소, 양도가액에 관한 정보요구권을 가진다. 위 각 정보요구권은 저작권단체를 통해서 행사될 수 있다.⁴³⁾

(3) 영국

41) Ralph E. Lerner, Judith Bresler(주13), p.1323.

42) Akiko Ogawa, "The potential of adapting Droit de Suit in Japan-Based on the interviews and researches held in France, Finland, and UK",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6, p.225.

43)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통권 48호(2007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182~184면.

영국은 추급권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에 가장 크게 반대한 4개국⁴⁴⁾ 중 하나였으나, 2006년 2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게 추급권 입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실상 중앙시스템⁴⁵⁾으로 추급권이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i)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추급권은 공동저작자에 공동으로 귀속하고 권리는 동등하거나 혹은 저작자들간에 합의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그러한 분배계약은 문서로써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ii) 또한, 영국은 EU지침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저작자 사후에도 추급권을 권리승계인에게 인정하도록 하는 시기에 관하여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작고한 작가에게까지 권리행사를 인정하기에는 시스템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 뉴욕 시장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생존작가 작품에 대해서만 추급권을 적용하겠다는 의도이다.⁴⁶⁾

(4) 기타

북유럽국 중 스웨덴의 유언이나 상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도불가능성을 규정하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으나, 프랑스와 다르게 법정상속인 외의 타인에게 유증할 수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추급권 제도에 반대한 오스트리아는 추급권 적용의 최소판매가를 3,000유로로 규정하여 사실상 사진은 추급권 수혜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입법을 하였으며, 중앙징수시스템이 아닌 자율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정보접근의 용이성과 추급권 배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⁴⁷⁾

44)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영국은 추급권이 적용되는 프랑스의 회피시장으로 커다란 이윤을 창출한 바 있다. 지침의 전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공동체 내에서의 경쟁의 왜곡과 시장 대체(distortions of competition and displacement of sales within the Community)”를 시정한다는 지침의 입법 목적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

45) 영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관리단체 설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DACS(Design and Artist Copyright Society)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단체들은 사라져 사실상 중앙시스템인 상태이나, 복수설립의시스템은 DACS의 추급권료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46) John Denham, "Derogation for deceased artist's work",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2008.

4. 미국 캘리포니아의 입법상 특이점

미국의 2대 미술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추급권은 앞에서 언급한 유럽 국가들과 다른 내용을 많이 포함한다. i) 현행 캘리포니아주 민법(The Civil Code of the State of California) 제986조는 추급권을 양도가능한 권리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5% 이하의 추급권료에 대한 추급권 행사는 포기불가능하지만,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면에 의한 포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⁴⁸⁾ 또한, ii) 같은 법 제986조에 따르면 추급권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의 사후 20년까지로 하므로 유럽에 비해 현저히 짧다. iii) 중앙징수시스템을 취하지 않고 각각의 판매자가 직접 저작자에게 지불하므로 실제로 어느 정도 추급권의 지불이 행해지고 있는지 총체적인 파악이 어렵고 판매사실을 미술가에게 알리는 통지시스템도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⁴⁹⁾

IV. 미술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

1. 유럽사법재판소 Case C-518/08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스페인 미술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이하 '달리')는 1989년 1월 23일 법정상속인 5명을 남기고 스페인에서 사망하였다. 달리는 생전에 스페인 정부를 그의 포괄적 수증자로 지정하여 그의 전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47) Stefan Lück, "Das Folgerecht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vor dem Hintergrund der Novelle des §26 des deutschen Urheberrechtsgesetzes Ein Vergleich", *GRUR Int* 2007 Heft 11, p.890.

48) Jennifer J. Wirsching, "The time is now: The need for federal resale right legislation in light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Review*, 2006, p.441.

49) Akiko Ogawa(주42), p.178.

유증된 그 권리는 현재 1983년 스페인 법에 의해 설립된 갈라-살바도르 달리 (Gala-Salvador Dali) 재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 갈라-살바도르 달리 재단은 달리의 저작권을 전세계 범위에 걸친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VEGAP(Visual Entidad de Gestión de Artistas Plásticos)에게 1997년도에 위탁하였다. 그 VEGAP는 다시 프랑스에서의 저작권 관리에 관하여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ADAGP (Société des auteur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에 위임하고 자매회사 관계를 맺었다.

ADAGP는 프랑스에서 달리의 작품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징수하여 그 금액을 VEGAP를 거쳐 갈라-살바도르 달리 재단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추급권료는 갈라-살바도르 달리 재단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프랑스의 국내법에 따라 직접 달리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추급권 수혜자의 인적 범위에서 달리가 유언으로 지정한 수증자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법정상속인들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자 갈라-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VEGAP은 달리의 유언과 스페인법을 근거로, 프랑스 국내에서 저작물의 경매를 통해 발생한 추급권료도 갈라-살바도르 달리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ADAGP를 상대로 추급권료 지급청구소송을 파리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되었다. 파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할지법인 프랑스법을 적용하면서, 프랑스 저작권법이 EU지침에 저촉되는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구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0년 4월 15일 예술품 원본 저작자의 추급권에 대한 EU지침 제6조 제1항의 해석을 위한 예심절차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달리의 유언상 저작권 수증자인 스페인 정부(갈라-살바도르 달리 재단)를 배제하고, 달리의 법정상속인들에 대해서만 추급권료를 지급하도록 정한 프랑

스 국내법⁵⁰⁾이 EU지침에 저촉되는지 여부

EU지침 제6조〈추급권료의 수령권자〉 제1항: 제1조에 규정된 추급권료는 저작물의 저작자,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제8조 제2항⁵¹⁾을 조건으로 그의 권리승계인(those entitled under author of the work)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판결 요지

아래 내용은 판결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U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판례법의 시초로 돌아가 법문의 표현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이나 취지를 상기해야 한다.

50) 2001 EU지침을 프랑스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제2006-961호(2006. 8. 3)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개정된 IPC L. 122-8(1):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에서 발생한 그래픽, 조형 미술작품의 원저작자는 추급권을 가진다. 작품의 거래에 매도인, 매수인, 중간상인의 자격으로 관여하는 한, 저작자 또는 그의 양수인이 최초로 양도한 뒤에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한 모든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이 권리는 매도인이 저작자로부터 직접 저작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가격이 10,000유로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추급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U지침에 의해 개정되지 않은 IPC L. 123-7: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는 제122조의 8에서 규정한 추급권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제123조의 6에서 규정한 권리는 어떤 수증자나 권리승계인이든 배제하고 그의 배우자에게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번역 참조: 서달주,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51) 제8조 〈추급권의 보호기간〉 제1항: 추급권의 보호기간은 93/98/EEC 지침 제1조에서 정한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과 동일하다.

제2항: 제13조의 효력발생일에 추급권을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들은 제1항으로부터 일탈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까지는 미술인의 사망 후에 그의 권리승계인(those entitled under the artist)의 이익을 위하여 추급권을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3항: 제2항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미술인의 사망 후 그의 권리승계인(those entitled under the artist)을 위하여 추급권을 적용하도록 요구받기 전에 자국의 경제운용자들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추급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회원국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종료하기 최소 12월 전에 자체 판단을 내리는 위원회에 통지하여 위원회가 그러한 정보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적절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1월 내에 위원회에 통지하고, 자체의 결정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통지 및 정당성 입증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은 유럽공동체의 관보에 공표하고, 또한 유럽 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EU지침 2001/84/EC의 제6조 제1항에서 'those entitled under the author of the work'의 'those entitled'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느 예시도 두고 있지 않다. 이렇듯 개념에 관한 다른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EU지침 2001/84/EC 도입 당시의 입법목적이 검토되어야 한다.

EU지침 2001/84/EC에서는 두 가지 입법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문 제3조와 제4조⁵²⁾에서는 그래픽 미술과 조형 미술의 저작자가 그들의 원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전문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정 회원국이 미술시장의 경쟁 왜곡이나 시장 중심의 이동을 야기하는 것에 중지부를 찍는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미술가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EU지침 2001/84/EC 제1조 제1항⁵³⁾은 추급권의 양도불가능성과 선포기불가능성을 규정한다. 첫 번째 목적 달성은 저작자 사후 추급권 승계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이루어지는지 여부나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추급권이나 추급권의 기초를 이루는 사항들과 추급권 요율에 의해 영향 받는 판매와 작품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전문 제9조⁵⁴⁾에 의해 명

52) 전문 제3조: 추급권의 목적은 그래픽 또는 조형미술 저작자들이 그들 원저작물의 경제적 성공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추급권은 그래픽 또는 조형 미술의 저작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저작물의 연속적인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타 저작자의 경제적 상황 간의 균형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준다.

전문 제4조: 추급권은 저작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저작자의 기본적인 특권이다. 그와 같은 권리의 도입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저작자들에게 적정하고 표준적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53) 제1조 제1항: 회원국들은 저작자가 미술 원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 그의 이익을 위하여 원저작물의 재판매로부터 얻은 판매가에 기초하여 추급권료를 수령할 추급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하여야 한다.

54) 전문 9조: 현재 추급권은 다수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현존하는 그와 같은 법률들은 특히, 대상작품, 추급권료의 수령권자, 적용 요율, 추급권료 지급이 요구되는 거래, 그리고 추급권료의 산정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권리의 적용 여부는 역내 시장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추급권에 근거한 지급 의무의 준부는 미술작품의 판매를 원하는 각 개인들이 창작하는 요소

확해지는데, EU 입법부는 추급권을 시행하는 영역 내의 옥션하우스나 아트딜러들의 손실, 즉 예술품의 판매가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이나 다른 회원국에 비해 추급권료 요율이 적은 국가에만 집중되는 현상⁵⁵⁾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문 제13조 내지 제15조⁵⁶⁾를 보면 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 회원국들의 모든 법규정들을 조화시킬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한 많은 범위를 국내 결정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역내시장의 기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규정들만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명백하다.

전문 제27조⁵⁷⁾를 보면, EU 입법부는 저작자 사후 권리승계자가 추급권의 향유를 충분히 하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는 반면에 각국의 상속법에 대해까지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권리는 공동체 내에서 경쟁의 왜곡뿐만 아니라 판매의 대체를 야기하는데 일조하는 요인이다.

55) 추급권이 미술품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로서, 영국에서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영국에서의 거래를 부추겼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Christine Ramonbordes, *Economic Impact of the European Directive on the artist's resale right or droit de suite*, Copyright Bulletin, 2000, p.29).

56) 전문 제13조: 법률 간의 기존 차이는 역내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지는 경우 제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역내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차이는 제거하거나 또는 그러한 차이의 출현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전문 제14조: 역내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은 왜곡되지 않는 경쟁 조건의 존치이다. 추급권에 관한 국내 규정들 간의 차이는 공동체 내에서 경쟁의 왜곡 및 판매의 대체를 야기하고, 또한 미술품을 판매하는 미술인들 간의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한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회원국들에 의한 조치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규율될 수 없는 초국가적 측면이다. 공동체 조치의 부재는 경쟁의 왜곡 및 불평등한 대우를 바로잡기 위한 유럽공동체조약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일 것이다.

전문 제15조: 회원국들의 법률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왜곡된 경쟁 조건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조건이 유지되기 쉬운 분야에서 국내 규정들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조화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급권에 관한 회원국들의 모든 법률 규정들을 조화시킬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한 많은 범위를 국내 결정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역내시장의 기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규정들만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57) 전문 제27조: 추급권료 지급을 받을 권리자(The persons entitled to receive royalties)는 자기결정의 원리가 존중되므로 (국내법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의 상속법에 관하여 지침을 통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권리승계인들(those entitled under the author)은 전적으로 추급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경과 규정의 만료 후에는 그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이 부차적인 원칙의 조화는 의도하지 않는다.

즉 EU지침 2001/84/EC의 목적을 보면, 저작자 사후 추급권을 향유할 자의 인적 범위는 각국의 입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판결 의의

첫째, 저작자 사후 추급권이 유언으로 지정한 수증자를 배제하고 법정상속인에게만 승계되도록 하는 프랑스 저작권법 제123조의 7은 EU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 이유로 우선 EU지침 2001/84/EC의 제6조 제1항에서 'those entitled under the author of the work'의 'those entitled'의 개념이 한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그 포괄적 개념은 결국 EU지침의 최초 입법 목적에 의해 그 의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인데,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저작자 사후 추급권의 귀속 문제는 EU지침이 강행적으로 의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those entitled'의 개념은 각국이 스스로 구체화할 수 있다.

EU지침의 첫 번째 입법목적은, 미술가에게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자 사후에는 법정상속인에게만 추급권 승계를 인정할지라도 이러한 목적달성에 전혀 해가되지 않는다. iii) 두 번째 입법목적은, 추급권이 유럽 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미술시장의 경쟁 환경이 불공정해지는 현상과, 그로인해 추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 사후에 누구에게 추급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 즉,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판매액 중 얼마의 추급권료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급되는지만 정해지면 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산출된 추급권료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관련 프랑스법은 EU지침의 문리적·목적적 의미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둘째, EU지침이 각국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조화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하고(전문 제4조), 각국의 자기결정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을 존중해야한다는 점(제16조)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EU지침은 어디까지나 국내법에 대해 보충적으로만 작용해야 하고, 통일적 규율은 지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3. 저작자 사후 추급권에 관한 프랑스 입법 태도

앞서 본바와 같이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추급권 수혜자의 인적 범위에서 달리가 유언으로 지정한 수증자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법정상속인들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제123조의 7). 이는 미술가가 추급권만은 유언으로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정상속인에게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저작자를 경제적 곤궁으로부터 해방시켜 창작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떠나서 생각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프랑스와 같이 입법함이 타당한지 법리적·현실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추급권의 양도불가능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고, 혹은 관리·처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권⁵⁸⁾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상 가능하기는 하나 과잉금지원칙의 한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일단 저작자의 추급권 처분 제한을 1단계: 생전 처분만을 제한하는 경우, 2단계: 생전 처분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처분까지도 제한하는 경우로 나누어본다면, 일단 추급권이 미술가에게 생존권 보장적 의미가 있고, 따라서 미술가가 포기를 강요받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1단계 처분제한은 정당하다. 모든 입법례는 1단계 제한을 추급권 제도의 본질적 부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 제한은 각 입법례상 일관되지 않다. 일단 EU지침은 저작자 사후에도 추급권을 인정하도록 강제할 뿐, 누구에게 추급권이 귀속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2단계의 처분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는 각국의 미술시장 환경과 저작자의 법정상속인 보호

58) 추급권을 대륙법계에서는 주로 재산권으로 보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인격권에 가깝게 본다(Jimmy A. Frazier, "Moral Rights, Artist Centered Legisl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art World: Notes on Building a Sociology of Copyright Law", 70 Tul. L. Rev., 1995, p.316).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초로 추급권을 도입할 당시 전쟁 이후 저작자의 유족을 배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에도 제123조의 7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i) 저작자가 유언으로 추급권의 승계인을 지정하는 경우란 대개 재단 설립을 예정하는 것인데, 재단을 설립할 정도의 명성을 가진 미술가의 법정상속인들은 이미 저작자가 사망할 무렵에는 부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ii) 추급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명성을 올리는 데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의 면도 가진다는 점에서도 프랑스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저작자로서는 오히려 명성을 오래 기리고자 재단을 설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자 사후에는 저작자의 사망 사실 자체가 작품 가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작품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성 상승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의 추급권료는 저작자의 유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귀속되어야 타당하다.

반대로 i) 저작자 사후의 추급권을 저작자 생전에 미리 화랑 등에 유증하도록 강요당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ii) 추급권료는 저작물에 대해 누리는 이익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유언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다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한편, 프랑스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위 프랑스 저작권법 제 123조의 7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법정상속인에게만 추급권을 인정하고 수증자에게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⁵⁹⁾ 추급권이 양도불가능한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프랑스 저작권법 제 122조의 8은 저작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여 규정한 것이고 이는 저작자가 계약체결에 있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강행규정이며, 이러한 양도불가능한 권리인점을 전제로 보면 저작자 사후 추급권을 법정상속인에게만 귀속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추급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⁶⁰⁾

59)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root/bank/download/cc2012276qpc.pdf>(2014. 9. 25. 방문)

V. 결론

국제적 상황이나 현실적 필요성을 볼 때 추급권 도입은 가까운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추급권을 도입한다면 구체적 권리 내용을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자 사후 추급권의 귀속의 인적범위에 관하여 EU지침으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 각국이 스스로 규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하였고, 그렇다면 우리는 프랑스 입법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프랑스와 같이 법정상속인에게만 귀속되도록 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 미술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추급권을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아 재산권의 양도가능성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한계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생전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경제적 지원, 즉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지는데, 저작자가 사망하는 즉시 그러한 보장적 취지는 약화된다. 그렇다면 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의 인적범위를 규율할 때에는 추급권의 보장적 목적 외에도 저작자의 유언의 자유나 저작권 승계인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오승중, 『저작권법』, 2007.
최병식, 『미술시장 트렌드와 투자』, 동문신, 2008.
서달주,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저작권동향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60) 저작권동향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02~303면.

-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48호(2007 가을호), 세창출판사.
-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계간저작권』, 제79호(2007 가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남궁술·박광동, “유럽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대응”,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남영숙, “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제82호(2008.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석종욱, “독일 제5차 개정 ‘저작권법’상의 추급권과 유럽공동체 지침 2001/84”, 『최신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소병희, “미술품 재판매 저작권료 부과에 대한 소고”, 『문화경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04. 12.
- 이동기·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85호(2009.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채명기, “미술 원작품의 저작자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2001/84 지침”, 『계간저작권』 제56호(2001. 겨울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Akiko Ogawa, “The conditions need to be consider for implementing the resale royalty right”,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8.
- Akiko Ogawa, “The potential of adapting Droit de Suit in Japan-Based on the interviews and researches held in France, Finland, and UK”, *Waseda Institute for Corporation Law and Society*, 2006.
- Christine Ramonbordes, *Economic Impact of the European Directive on the artist’s resale right or droit de suite*, Copyright Bulletine, 2000.
- Eliza Hall, “The French exception: Why the resale royalty works in France and why it matters to the U.S” *I J. Int:l Media&Ent. L.* 321, 2007.
- Jennifer J. Wirsching, “The time is now: The need for federal resale right

- legislation in light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Review*, 2006.
- Jimmy A. Frazier, “Moral Rights, Artist Centered Legisl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art World: Notes on Building a Sociology of Copyright Law”, *70 Tul. L. Rev.*, 1995.
- Jörg Wunschel, “Article 95 EC revisited: is the artist’s resale right directive a community act beyond EC competence”, *Oxford Journal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Vol. 4, Nr. 2*, 2009.
- John Denham, “Derogation for deceased artist’s work”,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2008.
- Katreina Eden, “Fin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should be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18 N.Y. Int’l L. Rev.* 121, 2005.
- Matina Supper, “An analysis of droit de suite from a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2000.
- Michael B. Reddy,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fine artists should have the right to a resale royalty”, *Laya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Journal*, 1995.
- Ralph E. Lerner, Judith Bresler, *Art Law(3rd edition)*, Practising Law Institute, 2005.
- Thomas Dreier et al.,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 Victoria Till, “Defeated or Deferred? Why a resale royalty was rejected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007, vol. 13, no. 3.
- WIPO, “Wipo national seminar on Copyright, related rights and collective management”, *WIPO*, 2005.
-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root/bank/download/cc2012276qpc.pdf>

[Abstract]

The resale right after the death of the author of a work of art

Kim, Young-lim

The Master's Course, Law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e resale right is the author of the artistic work has the right to receive a share of the revenue from the resale of the work continually after the initial transfer. Despite the decision to consult again within two years after KO-EU FTA into force about adoption of the domestic legislation, did not yet have proposed a specific direction about adoption. Moreover, there is no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right successor after the death of art authors, if we have the right to be adopted, even though it is made to do our own discipline in the country.

The following looks at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for the EU Directive(Resale Directive) and the attitude of the French legislation concerning the scope of the right successor after the death of art authors.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U Directive Article 6 paragraph 1 simply defines as 'those entitled under author of the work' about the scope of the right successor after the death of art authors, that phrase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EU Directive.

I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U Directive on the resale rights,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right successor after the death of art authors the EU Directive did not try to discipline uniformly across countries. After all,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EU Directive, the specific scope of the right successor of each Member State is allowed to legislate to suit their own

circumstances.

Consider the attitude of the French legislation first introduced the resale rights, the resale right is passed only to legal heirs of the author,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author. Even in France, even if such legislation is determined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f adopted in domestic limiting the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may well be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e will be considering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freedom of making wills, not limited to the living standard security purposes of resale rights to pursue.

Key words : the resale right, the resale right after, the death of art authors, artistic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